

『구미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』

검 토 보 고 서

1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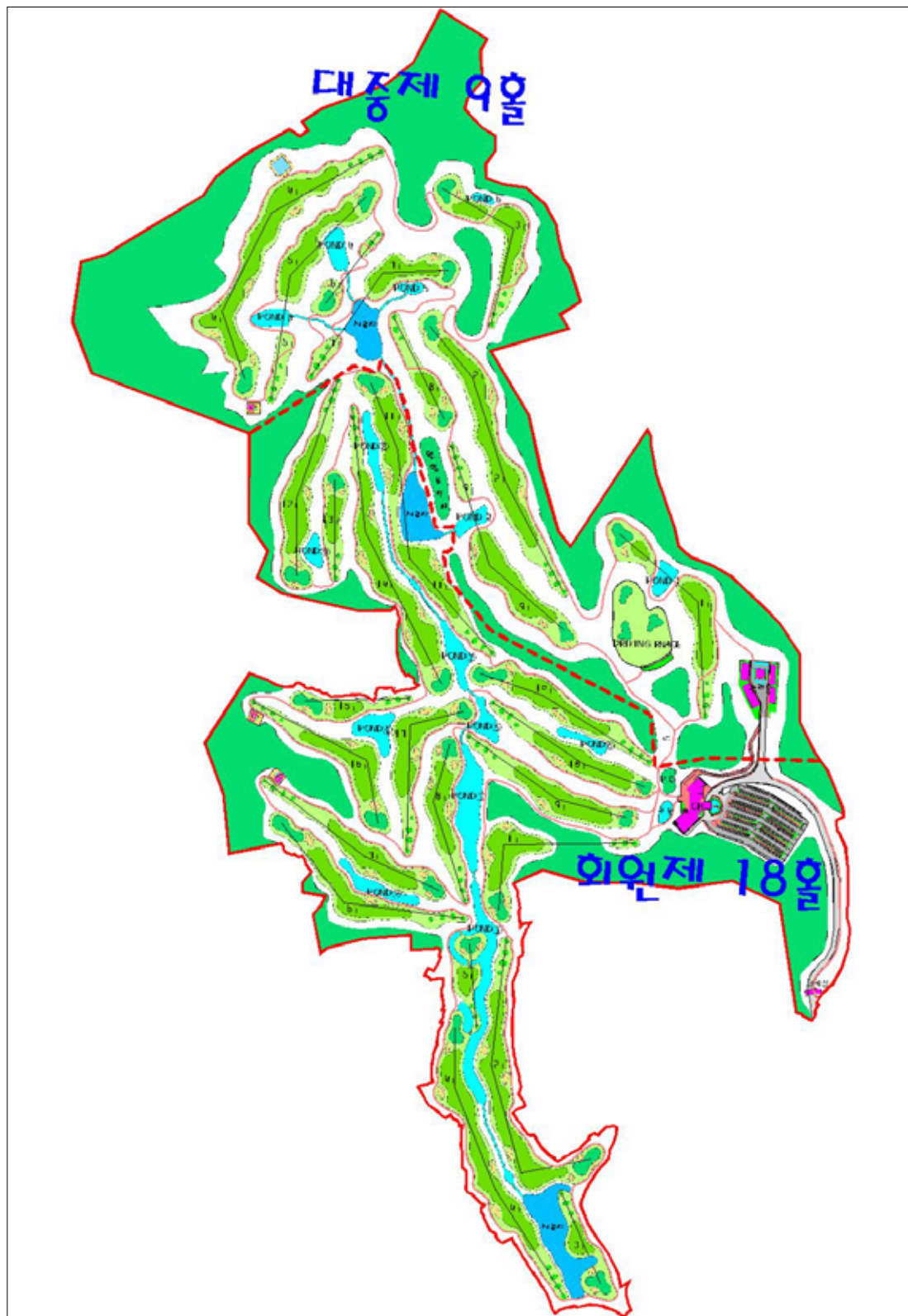
2 제안 이유

시민의 여가선용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건전한 체육활동을 통한 정서를 함양하고 자연지형을 최대 이용한 계획 조경 식제로 인공과 자연의 조화를 이룬 효율적인 국토개발을 유도하고, 고용증대 창출과 소득향상 및 세수증대에 기여는 물론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 수요를 충족하여 체육진흥에 이바지하고자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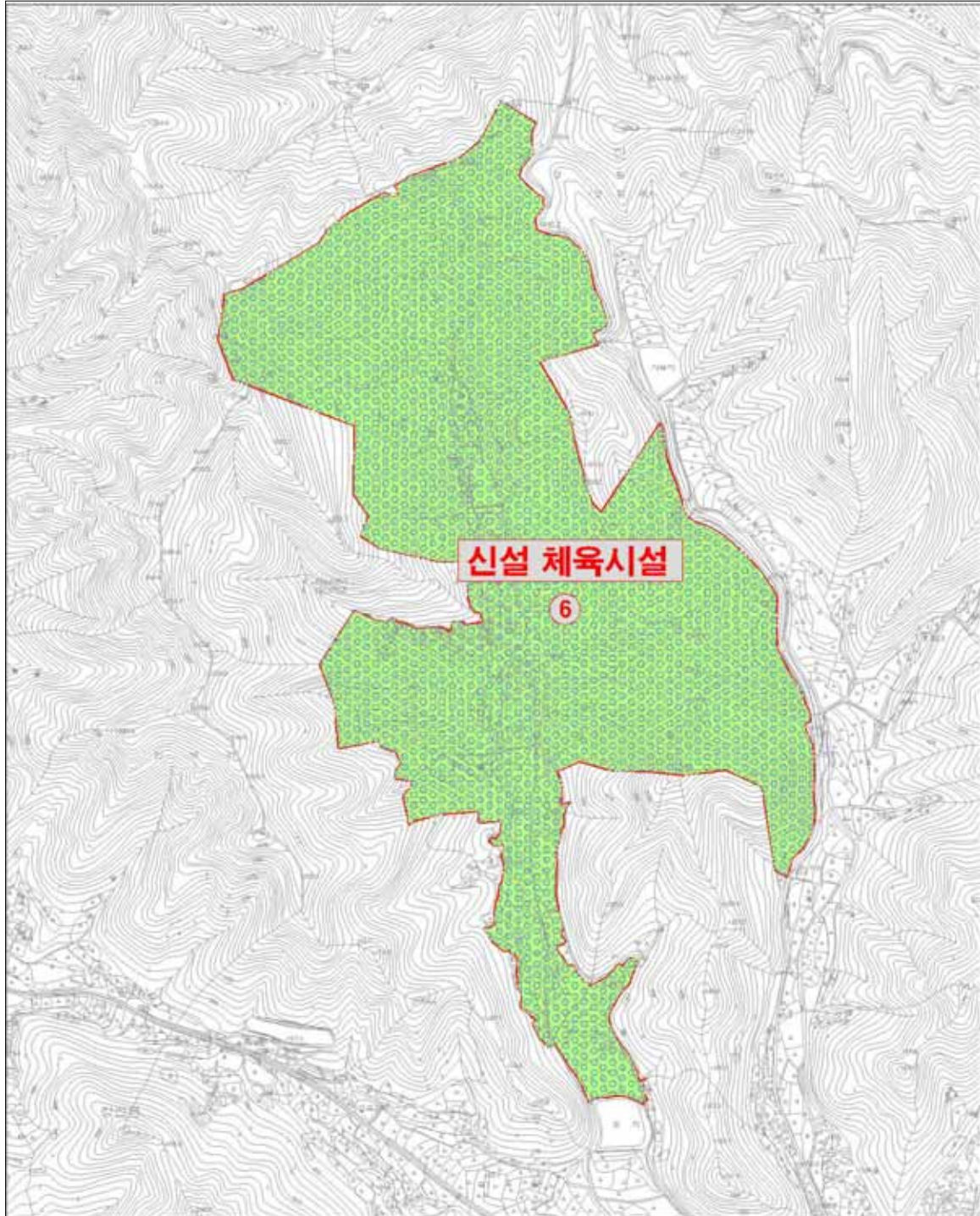
3 주요내용

- 위 치: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 상림리 산81-1번지 일원
- 변경내용
 - 당 초 : 관리지역 (226,384㎡), 농림지역 (1,061,906㎡)
 - 변 경 : 계획관리지역 (1,288,290㎡)
- 증감사항
 - 관 리 지 역 감 226,384 ㎡
 - 농 림 지 역 감 1,061,906 ㎡
 - 계획관리지역 증 1,288,290 ㎡
- 사업기간 : 2006년 ~ 2008년

■ 토지이용계획"안"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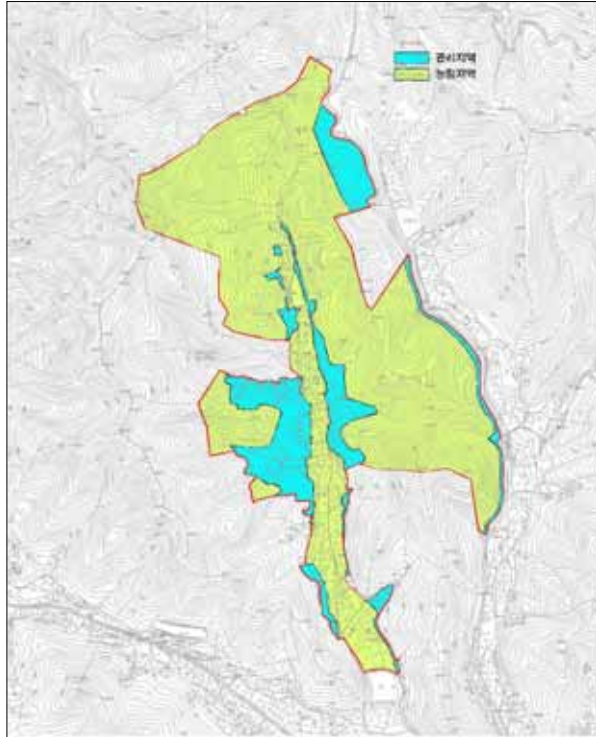


▣ 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)결정"안"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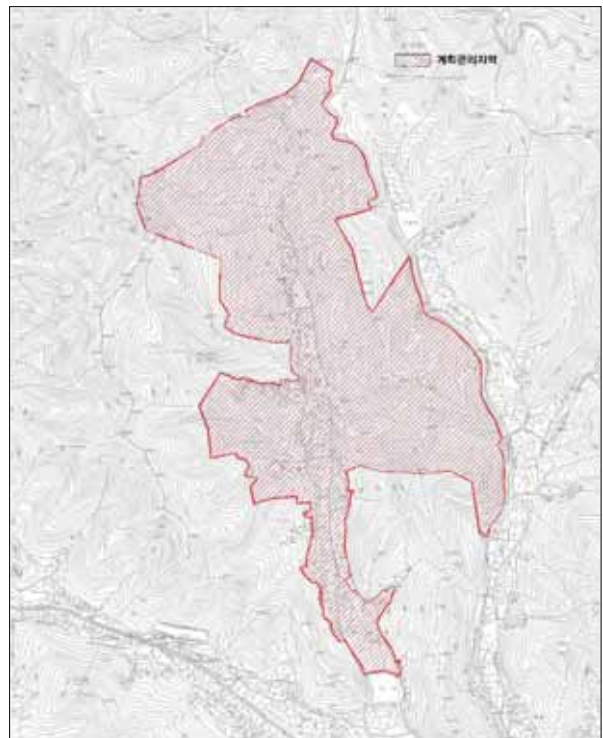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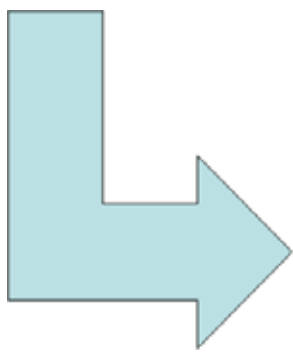


▣ 용도지역 결정(변경)"안"도

당 초



변 경



4. 참고사항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

5. 검토의견

- 장천면 상림리 산 81-1번지 일원을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골프장을 건립코자 하는 사항으로서
- 수출 300억불 시대를 여는 정주환경 개선 계획의 일환으로서 시민들의 여가선용 공간 확보 및 세수 증대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